

입시홍보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04. 개정 2020.07.16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4.04.29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입시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입시홍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 2. 입시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
 3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.04.04.><개정 2020.07.16.>
-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, 2024.04.29.>
- ③ 위원은 교수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는 홍보특성에 맞는 홍보팀을 구성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장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.

제6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/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팀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8조 (수당)

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보칙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03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7.16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4.2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